

### 3. 무역협정 - 한·미 FTA

#### □ 추진경과

2003.08	“FTA 추진 로드맵“ 마련 -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
2004.05	USTR 부대표 한-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 표명
2004.11	APEC 계기 한-미 통상장관회담(칠레)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
2005.02.03	한-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1 차 회의 개최(서울)
2005.03.28-29	한-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2 차 회의 개최(워싱턴)
2005.04.28-29	한-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3 차 회의 개최 (워싱턴)
2005.05.02	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-미 통상장관회담 (파리)
2005.06.03	APEC 계기 한-미 통상장관회담 (제주)
2005.07.24-28	본부장 방미, 주요 상하원의원 및 업계 설득
2005.09	미행정부, 한국 등 4 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정부 내부 회의, 외부전문가 자문, 설문 조사 등을 통한 검토 전문가 연구 :정부 발주 연구용역 포함, 10 여개의 국내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, 공청회진행 설문조사 :04.11 월 전경련(87%),12 월 무역협회(75%) 및 한국갤럽(80%),'06.2 월 중기협(80%)의 한-미 FTA 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, 응답대상 대부분이 한-미 FTA 체결에 찬성 (괄호는 찬성비율)
2005.09.19-21	본부장 방미, 주요 정부관계자 면담
2005.09.20	한-미 통상장관회담 (워싱턴)
2005.10.11	한-미 통상장관회담 (제네바)
2005.11.16	APEC 계기 한-미 통상장관회담 (부산)
2006.01.31	본부장-Portman USTR 대표 면담 (워싱턴)
2006.02.02	한-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및 결정
2006.02.03	한-미 FTA 추진 발표 (워싱턴 미 상원의사당) -본부장-USTR 대표 공동 기자회견
2006.03.06	한-미 FTA 제 1 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
2006.04.17-18	한-미 FTA 제 2 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
2006.06.05-09	한-미 FTA 제 1 차 공식협상 개최 (워싱턴)
2006.06.27	한-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
2006.07.10-14	한-미 FTA 제 2 차 공식협상 개최 (서울)
2006.09.06-09	한-미 FTA 제 3 차 공식협상 개최 (시애틀)
2006.10.23-27	한-미 FTA 제 4 차 공식협상 개최 (제주)
2006.12.04-08	한-미 FTA 제 5 차 공식협상 개최 (몬타나)
2007.01.15-19	한-미 FTA 제 6 차 공식협상 개최 (서울)
2007.02.11-14	한-미 FTA 제 7 차 공식협상 개최 (워싱턴)
2007.03.08-12	한-미 FTA 제 8 차 공식협상 개최 (서울)

2007.03.19-22	한-미 FTA 고위급 협상 개최 (워싱턴)
2007.03.26-04.02	한-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(서울)
2007.04.02	한-미 FTA 협상타결
2007.05.29-06.06	법률검토회의(워싱턴)
2007.06.21-22	추가협의를(서울)
2007.06.30	한미 FTA 서명(워싱턴)
2007.09.07	한미 FTA 비준동의안 17 대 국회 제출
2008.10.08	한미 FTA 비준동의안 18 대 국회 제출
2009.04.22	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
2010.11.30-12.03	한-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(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) -12.3 추가협상 타결
2011.02.10	한-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
2011.05.04	한-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(외교통상통일위원회)
2011.06.03	한-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
2011.09.16	한.미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
2011.10.03	한·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
2011.10.05	미 하원 세입위 한-미 FTA 이행법안 통과
2011.10.11	미 상원 재무위 한·미 FTA 이행법안 통과
2011.10.12	미 상·하원 본회의 한·미 FTA 이행법안 통과
2011.10.21	미 오바마 대통령 한·미 FTA 이행법안 서명
2011.11.22	한-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
2011.12.05-12.06	한-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 (워싱턴)
2011.12.19-12.20	한-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 (워싱턴)
2012.01.27-01.28	한-미 FTA 이행점검협의 (LA)
2012.02.19-20	한-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(시애틀)
2012.02.21	발효일자 합의(외교 공한 교환)
2012.03.15	발효
2012.05.15-18	제 1 차 한-미 FTA 공동위원회 (워싱턴)
2012. 06.7-8	한-미 FTA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 개최
2012. 07.05	한-미 FTA 의약품 위원회 (서울)
2012.11.07-08	한-미 FTA 분과위 개최 : 농업위원회, 섬유위원회, 정부조달작업반 (워싱턴)
2012.12.24	한미 FTA 섬유원산지 규정에 관한 각서 교환

자료 기입일 : 2013년 1월 19일

□ 농업 분야에 대한 기대효과

- (수입)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對미 수입은 연평균 4.2억\$ 증가하고, 對세계 수입은 2.6\$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對미 수입 증가폭에 비해 對세계 증가폭이 작은 것은 한/미 FTA로 수입선이 다른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전환되는 효과에 기인

< 한/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對미 수입 증가액(백만\$) >

	연평균			
	1-5년	6-10년	11-15년	
對미 수입증가(A)	424	233	449	591
타국 수입증가(B)	161	88	170	224
對세계 수입증가(A+B)	264	145	279	367

자료 기입일 : 2013년 1월 19일

- (생산) 농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국내 농업의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,150억원 수준
-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축산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4,866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

< 분야별 농업 생산 감소액 (15년 연평균, 억원) >

	합계				
	축산	과수	채소/특작	곡물	
생산 감소액	8,150	4,866	2,411	655	218

\*발효 이후 15년 이전에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은 종료되는 해외 생산감소액이 15년까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생산감소액을 산출

자료 기입일 : 2013년 1월 19일

- (기존 분석과의 비교) 對米 수입이 기존 분석에 비해 다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산 감소분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
  - 분석결과 차이는 최신통계 반영 과정에서 그간의 농산물 對米 수입의 급증과 생산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에 기인
  - 對米 농축산물 수입액(억\$) : (03~05년 평균) 25.6 → (06~08년 평균) 41.3
  - 농업 생산액(조원) : (05년)35.1 → (08년)38.5

< 기존 분석과의 비교 (15년 연평균) >

구분	기존분석<80~05년 통계>	재분석<80~08년 통계>
對米 수입 증가(백만\$)	370	424
생산감소(억원)	6,698	8,150

자료 기입일 : 2013년 1월 19일

□ 수산업 분야에 대한 기대효과

- (수입) 수산물의 對米 수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,178만\$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  - 품목별로는 명태(459만\$), 넙치(293만\$), 아귀(96만\$) 등의 순으로 수입증가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(수출) 수산물의 對米 수출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78만\$ 증가할 것으로 예상
  - 對米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다랑어와 굴 등으로 분석

	연평균			
	1-5년	6-10년	11-15년	
수입	11,777	8,561	12,768	14,002
수출	776	374	867	1,086

자료 기입일 : 2013년 1월 19일

○ (생산) 향후 15년간 연평균 295억원 수준 감소할 것으로 분석

- 생산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은 원양산업으로서 연평균 154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
- 원양산업의 주요 조업품목인 명태 등은 미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서, 한/미 FTA발효에 따라 미국산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

< 어업별 생산 감소액(백만원) >

	연평균			
	1-5년	6-10년	11-15년	
합계	29,542	16,877	31,731	40,016
연근해	8,741	4,460	9,553	12,209
양식	4,924	3,515	5,227	6,029
원양	15,401	8,651	16,406	21,146
내수면	476	252	544	632

자료 기입일 : 2013년 1월 19일

○ (기존 분석과의 비교) 한/미 FTA에 따른 수산물 수입증가는 기존 분석과 유사하며, 생산 감소폭은 소폭 증가

- 수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

목의 06-08년 수출 실적이 없어 기존 분석결과를 그대로 인용

○ 최신 통계에 반영된 수산물 對미 수입이 기존분석시와 유사한 수준이나 수산물 생산은 기존통계 대비 증가한 데 기인

- 對미 수입 : (04~06년 평균) 146만\$ → (06~08년 평균) 145만\$
- 수산물 생산 : (04~06년 평균) 5.0조원 → (06~08년 평균) 5.8조원

< 기존 분석과의 비교(15년 연평균) >

	04~06년 통계	06~08년 통계
對미 수출(천\$)	776	776
對미 수입(천\$)	11,738	11,777
생산 감소 (억원)	281	295

자료 기입일 : 2013년 1월 19일

□ 농산물 양허

1. 양측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

양허 유형	우리나라 농산물				미국 농산물			
	품목수	비중	수입액	비중	품목수	비중	수입액	비중
즉시	578	37.8	16.5	55.3	1,065	58.7	1.8	82.0
2-3년	39	2.5	0.07	0.2	10	0.6	0	0.1
5년	337	22.0	3.6	11.9	401	22.1	00.5	2.0
6-7년	44	2.9	1.2	4.1	92	5.1	0.3	13.8
9~10년	344	22.5	1.4	4.7	180	9.9	00.5	2.0
10년 초과	157	10.2	4.7	15.7	65	3.6	0	0.0
계절/현행	16	1.0	2.1	7.2	-	-	-	-

제외	16	1.0	0.26	0.9	-	-	-	-
합계	1531	100	29.8	100	1,813	100	2.2	100

\* 수입액 : 2003-2005년 3개년 평균

자료 기입일 : 2013년 1월 19일

## 2. 우리측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

### 1) 농산물 양허 개요

- 국내 영향이 미미하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
  - 즉시철폐율 : 농산물 전체 품목수 기준 37.8%, 수입액 기준 55.3%
-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철폐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하여 양허
-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, 관세율할당, 현행관세 유지, 계절관세 도입, 세번 분리,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예외적 취급 및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을 확보

### 2)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

- (양허제외) 쌀 및 쌀 관련 제품(벼, 메현미, 찰현미, 멥쌀, 찹쌀, 쇠미, 쌀가루 등 16개 세번)은 완전 제외(양허표상 양허단계:Y)
- (현행관세 유지, TRQ)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, 일정량의 TRQ 제공
  - 식용대두, 감자(칩용 및 종자용 제외), 탈전지분유 및 연유,

천연꿀(부록 2-나-1에 규정된 품목 중 양허단계 X)

- (계절관세) 민감품목 중 수확·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우리나라 수확·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

\* 칩용감자(양허단계 U)

- (5.1~11.30) 이행 1년차부터 7년차까지 기준관세율(304%) 유지한 후, 이행 8년차부터 8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
- (12.1~4.30) 즉시철폐

\* 포도(양허단계 V)

- (5.1~10.15) 17년 균등철폐
- (10.16~4.30) 협정 발효일에 24%로 인하된 후, 이행 2년차부터 4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@

\* 오렌지(양허단계 W)

- (9.1~2월말일) 기준관세율(50%) 유지
- (3.1~8.31) 협정 발효일에 30%로 인하된 후, 이행 2년차부터 6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
- 오렌지는 계절관세와 함께 TRQ 대상

- (세번 분리)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,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 보호

\* 사과(HSK 0808100000)

-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(23년 세이프가드)
-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(10년 세이프가드)

\* 배(HSK 0808201000)

- 동양배 품종은 20년간
-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

\* 감자(HSK 0701900000)

- 칩용 감자는 계절관세(즉시 철폐 또는 15년간 관세철폐)
- 기타 감자는 현행관세 유지(TRQ 포함)

\* 대두(HSK 1201009000)

- 대두(장류박용, 간장원료)는 즉시철폐
- 기타 대두는 현행관세 유지(TRQ 포함)

## 2. 미국 측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

- 대미 수출 농산물중 품목수 기준 58.7%, 대미수출액 기준 82.0%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함.
- 미측의 민감품목인 낙농품, 설탕, 쇠고기 등에 대해 10년 이상 관세철폐 또는 TRQ를 설정(양허제외품목 없음)
  - 미국 관세율표(HTSUS) Chapter 99의 subchapter 20에 한·미 FTA 하 미국의 TRQ 적용 대상 품목 반영

## □ 농산물 관련 추가 협정 내용

- 관세율할당(TRQ: Tariff Rate Quota) :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하고, 그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
  - 우리측은 탈·전지 분유 및 연유, 오렌지 등 19개 품목 대상
  - 미측은 낙농품 대상
  - 대상품목(19개 품목) : 납치류, 명태, 민어, 탈·전지분유 및 연유, 식용유장, 버터, 치즈, 천연꿀, 감자(칩용 및 종자용

外), 오렌지, 보리(맥주맥 및 시리얼용 外), 맥아 및 맥주맥, 옥수수 전분, 식용대두, 사료용 근채류, 인삼, 조제분유, 보조사료, 텍스트린

- 미측 대상품목 : 낙농품

○ 협정 부록 2-나-1에 규정된 품목들(19개 품목)의 TRQ 관리방식으로 우리측은 선착순·수입권 공매·허가제도를 통한 수입권배분 등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(미측은 선착순 방식 도입)

- 우리측은 TRQ 수입자 결정,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「한·미 FTA에 따른 TRQ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(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12-32호, 2012.3.12)」으로 정하여 운영

○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: 쇠고기, 돼지고기, 인삼 등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이 일정 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는 경우,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

- 대상품목(30개 품목) : 쇠고기, 돼지고기, 양파, 마늘, 고추, 콩류, 고구마, 기타 뿌리 및 괴경류, 사과, 녹차, 생강, 맥아 및 맥주맥, 보리, 팝콘, 옥수수(기타), 메밀, 곡류·곡물의 분쇄물·가공곡물, 감자의 분·조분·분말 등, 옥수수 전분, 감자 전분, 매니옥 전분, 고구마 전분, 기타 전분, 낙화생, 참깨, 인삼, 참기름, 설탕, 주정, 텍스트린
- 후지사과, 고추, 마늘, 양파, 생강, 인삼, 참깨, 참기름 등 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 기간(2-3년간) 농산물 세이프가드 유지
- 제3장에 의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제10장(무역구제)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, 또는 1994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상의 조치와 동시 적용 또는 유지 불가
- 협정에 따른 원산지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상의 농업긴급 수입제한조치에 따른 관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.

○ 농산물무역위원회 (제3.4조)

-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 설치
- 각 당사국 대표로 구성
- 협정 제3장의 이행 및 운영 점검 및 관련 협력 증진
- 협정에 따른 여타 위원회 등과 협정 제3장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
- 공동위원회가 부여하는 추가 업무 수행
-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매년 최소 1회